
Policy and Law Report _Vol.12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28 ~ 2022.3.6) -

March 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2년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평가 및 '22년 투자계획,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함 최근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구조 전환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금년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67조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35.5조원 (53.0%)이상을 집행하여 투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공급·교통인프라 등 SOC분야,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안전 인프라, 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19) 43.5 ('20) 48.8 ('21) 52.4 ('22) 53.0 이상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글로벌 수준의 교통 인프라 건설 등 SOC 분야 (37.9조원) - (LH) 고양 창릉 등 제3기 신도시 용지매입비, 인천 검단 등 건설 공사비 등 (22.9조원) - (도로공사) 서울~세종,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등 30개 사업 (5.9조원) -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2단계, 서해선 복선전철 등 48개 사업 (3.9조원) ②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재 확보 등 에너지 분야 (16.1조원) - (한전) 신재생에너지 연계망 등 (6.2조원) - (발전5사) 고성 그린파워 건설 등 (4.1조원) - (가스공사) 당진 LNG기지 건설 등 (0.9조원) - (석유공사) 국내 대륙붕 탐사 등 (0.7조원) ③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5.7조원) - (철도공단) 재해예방시설 개량 등 (2.3조원) - (한전, 발전5사) 노후시설 교체 등 (2.1조원) ④ IoT기반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0.7조원) - (도로공사)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176억원) - (수자원공사) IoT 스마트댐 관리 등 (193억원) - (한전) 전력설비 디지털화 등 (0.3조원) - (산업단지공단)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등 (0.2조원)	2022-03-02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아래 주요내용들을 논의함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③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 종합점검 및 향후계획 ○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6월말) 지원 ○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22.9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시행 - 자금유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상정·논의 ○ '21.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25)과의 중첩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3월말 종료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한 허용 - 법인세(3/31)·종합소득세(5/31)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2.3월),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80→70%),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22.4월)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후 이달중 발표 예정 ④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 ○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일용근로자(분기→월), 특고(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지난해 말 기준 773만명의 월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21.7~12월)을 유도 ○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반기→월, '22년 세법개정)하고 국세청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 까지(~'22.9월) 개발 구축 ⑤ 한걸음 모델 운영성과 및 '22년 추진계획 ○ 동 모델 작동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빈집 활용, 도심공유숙박(이상 20년 과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21년 과제)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하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 ○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과제로 선정·검토 예정 ⑥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 이는 아이디어 창출·보호, 사업모델로의 활용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디어로*'를 기존의 여러 '국민제안 플랫폼**'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쏠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 *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특허청, '21.3월~) ** 광화문 1번가(행안부), 국민생각함(권익위), K-tech Navi(산업부) 등 ○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해결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 예정	2022-03-03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지원,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신설 등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에 총 2,2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지원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① (플랫폼 구축) 민간수요 기반 산업융합형 및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실증(340억원) ② (전문인력양성) 확장가상세계 청년전문가 양성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180명, 46억원) 개원,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랩 운영(10개, 24억원) 및 확장가상세계 융합대학원 신설(10억원) ③ (전문기업육성) 확장가상세계 특화시설(181억원), 메타버스 지역거점(13개) 지원(96억원), 가상·증강현실기기 핵심기술개발(112억원), 초실감 확장가상세계 구현을 위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259억원), 홀로그램 기술개발(253억원) ④ (신뢰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환경조성) 확장가상세계 법제도 정비,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 자율규제체계 정립	2022-02-28
산업통상자원부	•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고, 그간의 추진성과와 범부처 차원의 2022년 소부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그리고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글로벌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논의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 -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하여 소부장 R&D에 2.3조원 집중 투자 - '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재편 추진 * 백신 및 첨단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 ('22.上)	2022-03-03

부처	내용	일시
	②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가 * (법명칭안)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공급망 분석센터설치, ▲공급망 진단 평가, ▲공급망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등 -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지원('22.下)하고, 1,000억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 추가 조성 ③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확산 -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을 추진함 - 또한,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지속('22년 481억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22년 683억원) 강화,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22년 584억원) ④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 또한,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21년말→'24년말)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예정 *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지원 한도 확대(10%p) 등 * 외투자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반성장평가 우대, R&D지원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2022.2.28. 시행)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일괄 신고 절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보정기준을 정비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의 범위 확대 (제26조제1항제37호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②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 확대 (제28조의2제2호, 제28조의2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의2 및 제15호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보정기준 개선 (제75조제4항) -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함 -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함	2022-02-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④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 신설) -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 ⑤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 (제100조의4제1항 신설)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⑥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 개선 (제118조제4호 신설) - 직전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금년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2.28. 시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지나 수도권·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사항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2-2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그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 정비 및 세율 조정 (안 제34조) -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② 지방세조합 사무 관련 용어 등 정비 (안 제93조의2)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합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의 공매 등 사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변경함 ※ 의견 제시기간 : 2/28(월)~3/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로 제출	2022-02-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에 추가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022-02-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관련 세부사항 마련 (안 제19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③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60조의2 및 안 제64조의2)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시, 이전 방식과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을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28(월)~3/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로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하는 저작물등의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의 내용을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불법 저작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효적인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안 제46조) - 기존 제호등(제목·문자·부호)의 특징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추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할 의무와 그 로그 기록을 자동 저장 및 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②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안 별표4) -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표본 추출방식 대표성 미흡)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3/4(금)~4/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로 제출	2022-03-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 사업장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 이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생태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기업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제2항, 제11조) ② 법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조) ③ 법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 (안 제5조) ④ 지방자치단체도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9조) ⑤ 법률(제13747호, 2016.1.6. 및 제18506호, 2021.10.19.) 및 시행령(제28408호, 2017.10.31)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3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 삭제) ⑥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 기관의 범위에 포함된 기관 중 기관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 (안 제20조제4호 및 제5호) ⑦ 법률 개정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 (안 제21조) ⑧ 법률 개정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생태산업개발 촉진”으로 변경되고 그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조문의 제목 등을 변경 및 정비 (안 제22조)	2022-03-0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⑨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규정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지 제5호서식 신설) ⑪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4조제3항) ※ 의견 제시기간 : 3/2(수)~3/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로 제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 (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 -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②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 (안 제8조제2항) -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안 제9조제1항)	2022-03-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3/4(금)~4/13(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로 제출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열분해 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열분해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 (안 [별표 3]제1호가목, 제3호나목) - 열분해 시설을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기존 ‘열분해 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되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② 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안 [별표 8])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기준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3/4(금)~4/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2022-03-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각시설에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되어 소각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연물의 주요 반입처인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불연물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시설의 처리부하를 줄이고 혼합배출 최소화를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설현장 가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가연성 잔재물의 배출·선별 기준 구체화 (안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바목) -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②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 (안 별표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불연물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1차)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경고’로 조정 ※ 의견 제시기간 : 3/4(금)~4/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	2022-03-0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발생함. 현행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임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임.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음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안 제268조)	2022-02-28
정무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로인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 및 제159조)	2022-02-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정부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이하 "그린금융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그린금융협의회는 공동 녹색지원전략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국제사회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회의 횟수는 1차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58조의2 신설)	2022-03-02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1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9호 발간	
국회도서관	3/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6호 발간 -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3/10(목)	「현안, 외국에선?」 제31호 발간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